

제14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20. 7. 22.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20년 7월 22일

2. 회의방식 : 금융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은 성 수 위 원 장

손 병 두 부위원장

이 성 호 위 원

최 훈 위 원

윤 석 현 위 원

윤 면 식 위 원

위 성 백 위 원

심 영 위 원

4. 회의경과

(14시 00분 개회)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1) 2020년도 제12차 금융위 회의록, 제4차 임시 금융위 회의록, 제13차 금융위 회의록과 2020년도 제13차 및 제14차 금융위 안전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 2020년도 제12차 금융위 회의록, 제4차 임시 금융위 회의록, 제13차 금융위 회의록과 2020년도 제13차 및 제14차 금융위 안전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를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의결안건 심의

□ 의결안건 제247호 『(주)하나은행 및 와디즈플랫폼(주)에 대한 혁신 금융서비스 심사안』, 제248호 『(주)두물머리투자자문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249호 『케이비증권(주)에 대한 혁신 금융서비스 심사안』, 제250호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및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251호 『(주)파운트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 심사안』, 제252호 『(주)페이플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규제샌드박스팀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의결247호 (주)하나은행 및 와디즈플랫폼(주)에 대한 혁신 금융서비스 관련임. 지식재산권 신탁 수익증권과 관련해서 투자자보호 방안은?
- (보고자) 기존에 전통적으로 은행에서 해왔던 여신공급 외에 다른 수단으로서 지적재산권을 통해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봄. 그렇지만 투자자보호, 초기단계인 점을 감안해서 부가조건으로 2년 간 200억 원 이내로 그 규모를 제한하고, 신탁계약서에 투자자보호를 위한 신탁회사의 역할을 명시하며, 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함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253호 『(주)핀옥션소셜대부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주)핀옥션소셜대부가 최고금리 한도 등을 위반하여 영업전부 정지를 처분하는 내용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을 진술함

- (진술인) 첫 번째 이자율 제한 부분임. 이자율 24% 초과된 부분이 600만 원이며, 전체 대부금액 850억 원 중에서

0.01% 초과하게 됐음. (주)핀옥션소셜대부의 ○○○ 대표는 원래 건설업에 종사했는데 2018년 1월에 (주)핀옥션소셜대부를 인수하여 규정을 정확하게 못 봤는데,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에 담보권 설정비용이 다를 수 있다는 규정을 보고 전세권 설정 비용과 법무사 비용이 포함되는 줄 착오했는데 시정하도록 하겠음. 그리고 초과된 이자는 현재 고객들한테 다 반환했음. 두 번째, (주)핀옥션소셜대부는 대부업을 등록했습니다마는 대부업 등록되지 않은 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사항임. 경험 부족으로 대부중개업자를 소개해 달라고 해서 BNK캐피탈로부터 ○○○ 대표라는 분을 소개를 받았음. (주)핀옥션소셜대부는 BNK캐피탈이 합법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해도 되겠다고 착오를 하고 캐피탈과 대부업의 차이를 인지 못했음. 케이엠씨플렉스에 ○○○ 이사라는 분이 계심. 그분이 계약서를 들고 (주)핀옥션소셜대부로 왔을 때 케이엠씨플렉스 계약서를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 대표가 지배주주로 있는 계열회사 법인이 여러 개가 있음. 케이엠씨플렉스 뿐만 아니라 (주)케이엔씨대부라는 회사가 있음. 실제로 (주)케이엔씨대부가 자본금 6억 원으로 진정으로 대부중개업을 하는 회사였고, 케이엠씨플렉스는 자본금 5,000만 원 밖에 없는 껍데기 회사였음. 그렇다면 ○○○ 이사가 와서 (주)케이엔씨대부와 계약 체결했어야 되는데 ○○○ 대표는 이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함. 자본금 5,000만 원짜리 회사인 케이엠씨플렉스와 계약서를 체결하게 된 것임. 그런데 (주)핀옥션소셜대부에도 확인을 해보니까 케이엠씨플렉스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니 금융기관 대출모집대행으로 업태가 나와 있었음. 이것이 있으면 캐피탈도 다 대부중개를 해줄 수 있

다고 하고 BNK도 실질적으로 합법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어서 경험이 없다보니까 그러한 사실만 보고 대부중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거래를 해 왔음. 그런데 저희들이 추측하기로는 ○○○ 이사가 케이엠씨플렉스를 사용해서 대부업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함. 그 목적으로 (주)케이엔씨대부가 그때 당시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케이엔씨대부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지 않고 미등록업체인 케이엠씨플렉스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저희들의 무경험을 이용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음. 실질적으로는 케이엠씨플렉스 쪽에서 저희들의 무경험을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기망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고 있는데 위법성이 더 높은 케이엠씨플렉스에게는 영업정지 처분이 없는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수동적으로 당한 입장인데 (주)핀옥션소셜대부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림. 그리고 대부업법 시행령의 별표2를 보시면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꼭 그 기간대로 영업정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서울행정법원의 2015구단50446 판례가 있음. 세 번째, 저희가 워낙 경험이 없다보니까 임직원을 변경하면 15일 이내로 금융위원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점 착오로 누락했음.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과거의 임직원들은 현재 다 등록해서 보완한 상태임. 이점 참조하셔서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케이엠씨플렉스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람.

- (보고자) 케이엠씨플렉스하고 (주)케이엔씨대부라는 업체와 동시에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미등록업체인 케이엠씨플렉스하고만 계약했다고 했는데 검사현장에서 징구한 계약서에 보면 두 개와 동시에 계약을 맺었음. 그러니까 등록대부업체한 군데와 계약을 맺고 등록대부업체가 아닌 미등록대부업체와 2개를 동시에 계약을 맺었는데 실제 대부중개업무는 전부 다 미등록대부중개업체를 통해서만 거래를 하였음. 그리고 대부업법에서 1회 위반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6개월을 부과하는 것이 많지 않음. 그런데 그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자율 위반과 대부중개수수료, 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통한 대부중개임. 이 두 가지는 등록을 할 때 기본적으로 대표이사와 업무 총괄사용인으로 하여금 대부협회에 가서 교육을 받게 하고, 그 교육에서 가장 먼저 주안점으로 교육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몰랐다고 변명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 내용으로 1년 넘게 위반사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전에 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통한 제재의 경우 강남구청에서 6건 위반에 대해 이미 영업정지 6개월을 한 사례도 있음. 여러 가지 사례로 봤을 때 영업정지기간 자체가 크게 과도하다고 보이지는 않음.

- (보고자) 케이엠씨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동일인이 (주)케이엔씨대부라는 정식등록 대부중개업자와 케이엠씨플렉스라는 미등록중개업자 회사를 둘 다 가지고 있는 것임. 그런데 여기에서 BNK캐피탈이라고 하는 캐피탈 업체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대출모집을 했다고 하는 케이엠씨플렉스는 지금 법상의 대출모집인이라고 봐주시면 됨. 지금 대부업법의 규제는 대부업자는 대부중개업을 받은 중개업자로부터만 중

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여전사를 포함한 금융기관들은 대출모집인을 통해서 대출을 모집할 수 있게 되어 있음. 하지만 캐피탈사를 방문한 고객들을 대부업체로 유도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전부터 대부업자는 대출모집인으로부터 중개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본인들이 착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소개해 준 사람은 BNK캐피탈이니까 거기에서는 자기들이 쓰는 대출모집인을 소개해 준 것이고, 대부업체는 대출모집인으로부터는 대출모집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모르고 자기들은 계약을 했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대부업법에서 굉장히 강하게 규제하고 있는 부분임. 그래서 대부업법 체계로 보면 미등록중개업자에 다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임.

- (위원) 일반적으로 금리를 많이 받으면 영업정지가 맞다고 법에 있는데 우리는 부담을 다 이자로 본다고 해서 이자로 간주하지만 실제로 부담을 주는 것인데 이것도 영업정지를 해야 될 정도로 중대한 사항이나 하는 것에 대해서 진술인은 억울하다는 것이고, 그 정도로 우리가 엄하게 지금까지 했는지 아니면 대부업에만 엄하게 하고 은행들은 더 심하게 해도 안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과잉처벌에 해당되는 것인지?
- (위원) 이미 시행령에 영업정지 기간을 6개월로 정해 놓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술인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소규모 대부업자들한테 영업정지 6개월이라는 것이 영업정지 6개월 뒤에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지는 의문시됨. 이자율제한 준수 의무를 위반한 업체는 이렇게 강하게 처벌을 해서 퇴출이 되어도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한 것인지?

○ (보고자) 만약에 간주이자로 해당되는 부분을 허용하게 되면 대부업체 시장이라는 것이 틈새를 이용하여 약자들에게 엄청나게 금리를 올림. 만약에 이런 부분이라고 징계양정을 내려준다면 이 부분은 앞으로 금리이자는 낮추면서 간주이자 부분을 많이 받는 쪽으로 시장이 확 몰려 갈 것임. 그래서 대부업체는 기본적으로 8,000개나 되고 금융위가 관리하고 있는 업체는 지금 현재 1,237개임. 그래서 어떠한 조치를 내리는 지에 따라서 시장이 엄청나게 예의주시하고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간주이자라고 포함된다는 부분을 알아야 되고 그 부분을 소액채무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되는데, 일반 여신금융기관처럼 감안해서 터주게 되면 앞으로 대부시장에서는 이자는 적게 받으면서 간주이자 분으로 왕창 늘려버리는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54호 『(주)퍼스트와이제이대부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주)퍼스트와이제이대부가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 부터 대부중개를 받고 거래하여 영업전부정지를 처분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55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중소기업에 대한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금융투자업규정에 반영하는 내용

○ (위원)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위험가중치를 하향하게
되면 증권사들이 중소기업에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
음. 실제로 중소기업 대출의 공급을 확대하면 중소·벤
처기업의 경영상황 등에 대한 투명한 정보가 필요할 것 같
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 (보고자) 한국거래소에서도 상장 이전의 기업에 대해서 공시
트레이닝을 시키기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그런 식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인프라, 제도
적 기반을 구축해 주는 작업과 증권사에서 투자할 수 있는
작업이 맞닥뜨리게 되면 의도한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고 생각함.

○ (위원) 아무리 제도적인 개선이나 완화를 해 줘도 실제 분량
이 많지 않음. 증권사가 정책금융 위주로 자금조달을 하는
중소기업 분야에 과연 어떤 분야를 특화시켜서 할 수 있느
냐고 하는 것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임.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해서 감독당국과 증권사도 경험해서 위험비율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서 개선시켜 나갈 여지는 충분히 있을 것이라
고 생각함.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56호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 규정 승인안』, 제257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 제258호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제259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제260호 『한국거래소 파생 상품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ETP 및 종류주식 관련 시장 건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거래소 소관 규정의 변경을 요청하는 내용

- (위원) 개정사항이 시행되기 전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 (보고자) 현재 거래소 내부지침에 따라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하고 있음. 그 결과 문제되었던 상품의 괴리율은 전부 다 축소되어 지금은 정상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음.
- (위원) 기본예탁금 1,000만 원 도입은 발표만 한 상황인지?
- (보고자) 증권회사 회원사시스템을 개발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음.
- (위원) 레버리지 ETN이나 ETF 평균 거래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 (보고자) 금년 ETP상품들의 평균거래대금은 4조 원 정도임.
- (위원) 기본 예탁금 도입시 소액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진입장벽이 높아지니까 레버리지 ETN이나 ETP 시장이 침체될 우려가 있는데?
- (보고자) 개인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은 증권사 두 곳을 분석한 결과, 기본예탁금보다 투자금액이 적은 투자자는 소수인 것으로 파악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61호 『신한금융투자(주)와 (주)신한은행의 (가칭)레인보우자산운용(주)에 대한 출자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신한금융투자(주)와 (주)신한은행이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가칭)레인보우자산운용(주)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출자승인 신청하는 내용

- (위원) (가칭)레인보우자산운용(주)을 설립 후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보고자) 가교운용사 설립을 이달 중에 마무리하게 되면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고 있는 펀드들의 이관작업을 하게 될 것임.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62호 『케이알투자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케이알투자증권(주)의 금융실명법 위반과 관련하여 前임원에 대해 조치하는 내용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을 진술함

○ (진술인) 케이알투자증권(주)은 주문대리인 제도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했고,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과 주문대리인을 등록하는 과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행했음. 그 당시 실명제 위반에 대한 이슈는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했음. 케이알투자증권(주)은 스스로 이 서비스를 중단하였음. 본 건 행위와 관련하여 ○○○○○○이나 (주)○○○ 그리고 이용고객에 대해 어떠한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고 또 피해도 없었다는 점, 그리고 핀테크 신규서비스 도입 시 일부 업무미숙은 있었으나 금융질서를 현저하게 저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시어 감독자에게 선처해 주시기를 청원 드림.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주문대리인의 명의로 한 것을 실지명의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사전에 당국에 물어본 것은 없었는지?

- (보고자) 금융감독 당국에 사전에 문의한 바가 전혀 없었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63호 『(주)상상인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주)상상인증권의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등 자본시장법과 지배구조법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64호 『케이비증권(주)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케이비증권(주)의 종합검사 결과에 따른 자본시장법, 전자금융법 등의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위원) 증선위에서 수정심의회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람.

- (위원) 투자광고 절차 위반 관련하여 특정금전신탁 홍보 금

지 위반 및 단순한 제도의 변경 안내에 해당하는 문자메시지 총 51건은 위반건수에서 제외하되, 과태료 부과액은 원안대로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함.

○ 수정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만장일치로 수정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265호 『(주)상상인증권(舊 (주)골든브릿지투자증권) ○○○에 대한 직권재심 처리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주)상상인증권의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경고를 서울행정법원의 판시내용에 따라 취소하고 재조치하고자 하는 내용

○ (보고자) 원소송 자체의 주문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임. 그래서 저희가 승소한 것인데 이 판시된 내용 중 일부가 직권재심 사유가 되는 지급보증 건에 대해서는 지급보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시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66호 『메리츠자산운용(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험관리책임자 겸직 금지를 위반한 메리츠자산운용(주) 및 임직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을 진술함

- (진술인)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 금지 위반 문제로 삼고 있는 ‘Product Specialist’라는 직무는 자산운용의 상품전문가임. 펀드의 운용전략이나 투자 프로세스 특징 등이 마케팅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주로 하는 것으로 해외자산운용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존재하는데 국내에는 보편화되지 않은 직무임. 투자철학과 상품라인 등에 변화를 주고, 그 팀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스타일이 기존의 마케팅조직에 체화되는데 좀 더 효과적인 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Product Specialist 직무를 직제에 추가하고 리스크담당 선임자인 제가 겸직하는 형태를 취하였음. 그 이후에 위험관리책임자라는 직책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도입과 함께 신설되어서 자산운용의 본질적인 업무와 그 부서업무를 겸직 금지하는 요건이 적용됨에 있어 해당 여부를 금융위원회에 겸직실태 조사와 이후 발표된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 금지 가이드라인의 해석과 질의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특별히 이해상충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겸직을 유지하게 되었음. 본인도 포트폴리오 리스크의 전문가로서 고객소통에 일부 참여하였으며 업무적으로 도움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이러한 일부 개별사실들을 통해서 투자매매업자의 본질적인 업무로써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업무나

펀드의 계약/해지 담당자의 직무를 겸직했던 것으로 간주하여 회사와 직원이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 것은 다분히 과도하다고 생각함. Product Specialist 직무는 펀드의 판매업무가 근본적으로 포함되지 않고 판매실적에 연동해서 보수를 받거나 평가를 받지도 않기 때문이며 일상 업무활동의 개별 사실을 통해서 포괄적인 직무겸직 위반을 적용하는 것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위험관리책임자 겸직을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와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음. 그리고 소규모 자산운용사의 일상 업무에 대해서 과도한 부담을 주는 선례로 남게 될 수 있음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 다른 경쟁사에도 이와 유사한 직종이 있는지?
- (진술인) 일부 회사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음. 외국자산운용사에는 보편적으로 있는 직무임.
- (위원) Product Specialist가 있는 것은 있는데 CRO가 Product Specialist를 겸직하는 사례가 있는지?
- (진술인) 보편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음. 회사의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그 문제를 겸직했던 것이고 과거에는 다른 것은 없음.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금감원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 (보고자) Product Specialist라는 것이 원래 취지는 회사의 내규를 보면 운용하는 운용인력이 있고 마케팅을 하는 인력들 중간에서 절차를 안내하거나 상품의 리스크에 대한 것을 투자자에게 소개해 주는 정도로 되어 있음. 그런데 사실상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펀드에 대한 상품권유, 청약, 계약체결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다 했기 때문에 보조업무가 아닌 실질적인 판매 업무를 했다고 보여서 조치하게 된 것임.
- (위원) 진술인이 겸직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문의한 결과 그렇다는 답변을 받지 못해서 가능한 것으로 알았다고 했는데 그런 문의와 답변이 있었는지?
- (보고자) 행위자가 금융투자협회에 질의한 것은 ××××년이었는데 그때는 직판을 하고 있지 않았음. 그래서 직판을 한 ××××년 ×월 이후의 행위와 관련된 내용은 아닌 것임. 그리고 금융투자협회에서 그때 겸직을 허용한다고 답변한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67호 『메리츠대체투자운용(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사모단독펀드 해지의무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를 위반한 메리츠대체투자운용(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68호 『(주)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20년 4월 기준, 자기자본이 필요유지 자기자본에 미달한 (주)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게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하는 내용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을 진술함

○ (진술인) 필요유지자기자본이 하회하게 된 배경은 당사의 펀드 중 소송 중에 있던 일부 펀드들이 대법원 판결 및 1심 판결이 확정되며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했기 때문임. 이 충당부채 인식을 한 당사의 펀드들은 최근에 설정된 펀드들이 아니고 ××××년에 설정했던 ××년 된 펀드이고 만기도 ××년이 지난 펀드들이었음. 당사는 지난 ××××년 ×월에 대주주 적격심사를 통하여 최대주주가 (주)▲▲▲에서 (주)△△△로 변경되었음. 이번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했던 것은 현재 당사의 2대주주이고 주주변경 전 최대주주였던 (주)▲▲▲가 경영했던 당시 펀드들의 사고로 인한 것이고 그것을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임. 따라서 現주주와 경영진, 직원들에 대한 평가에서 이런 부분들을 참작해

주셨으면 함. 다음으로 당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일정을 다소 늦게 잡게 된 배경은 첫 번째 당사에는 총당부채인식을 한 既펀드 외에 오는 ×월××일에 추가적으로 주요 펀드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게 되어 있음. 동 펀드의 판결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일정들이 늦어졌다고 볼 수 있고 그 이유는 증자의 규모 및 시기, 투자자 유치 등을 결정할 때 동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함. 두 번째는 현재 2대주주 측은 최대주주 측과 경영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시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음. 증자를 위한 이러한 부분들이 법적으로 적법하게 처리되는 과정들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는데 이에 따라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조금 늦게 잡은 것임. 세 번째는 증자추진계획 중에 제3자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투자자유치를 도모하고 있는데 이 투자자유치는 국내 투자자 및 해외 투자자도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해외투자 유치 시 일반적인 보통의 시기보다 좀 더 오래 걸리는 과정들이 있음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일정을 조금 늦게 잡았음.

- (진술인) 우선, 심의 결과에 따라 의결하실 때 이 결정을 석달 정도 유예해 줄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함. 두 번째는 현재 투자자보호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가 대단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봄. 세 번째 이 문제가 야기되었던 부분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 대주주 지분을 사 간 회사가 현재 자본금이 ××억 원, 부채가 ×××억 원에 달할 정도로 극히 부실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저희를 기망해서 이 대주주 적격

을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적격 대주주가 아니어서 어떤 형태로든 증자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부실이나 위험에 노출을 시키기 힘들어서 적격 대주주를 찾는 부분에 진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직 1심 판결도 일부밖에 안 끝났고 또 하나의 판결은 이미 우리와 관계없는 판결인데 이것을 충당부채로 과도하게 인식한 형태로 제가 20년 동안 금융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았지만 이런 외부감사를 한 적도 없고 이렇게 이사회 결의한 것도 듣도 보도 못하고 처음임. 이 문제는 애초부터 대주주였던 (주)△△△가 처음에 ×××억 원을 내고 ××%의 저희 지분을 사 가기로 했는데 ××억 원만 내고 ××%의 지분을 사 갈 때 자기 돈은 ××억 원 밖에 안 들었고 ××억 원은 저희가 준 주식 가지고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캐피탈에서 돈을 빌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결국 ××억 원은 저희한테 빌려갔음. 결국 이 회사는 ××%의 지분을 ××억 원만 내고 가지고 가서 저희에게 ××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음. 그러다가 ×년이 되는 날까지 저희에게 갚도록 했고 나머지 ××억 원에 해당되는 ××%의 지분도 인수해 가기로 했는데, 그렇게 대주주는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았음. 그런데 ××억 원도 못 갚는 회사가 어떻게 나머지 ××억 원을 내고 가져가겠는지? 결국 ××억 원의 채무가 기한이익을 상실했고 기한이익을 상실해서 결국 자기들이 우리를 기망했는지 금융위원회를 기망했는지 모르겠음. 제가 말씀 드린 두 번째 이유는 투자자보호 장치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오늘 이 자리에 말씀드리기 위해 왔음. 또 현재 충당부채 설정에 대한 부분은 당장 그 충당부채 설정이 문제가 되었던 ×월부터 현재까지 자본유출이 없음. 앞으로도 자본유출이 있을 가능성이 없다고 스스로도 얘기하

고 있음. 그렇다면 이것은 재무적으로 이 총당부채가 적정한지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하여 현재 소송 중에 있음. 법원에서는 국내 5대 회계법인에 이 총당부채 설정한 형태의 외부감사보고서가 적정한지에 대해 감정신청을 했음. 아마 곧 삼일회계법인에서 감정을 할 것 같음. 감정결과에 따라서 이 총당부채가 적정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날 것 같음. 따라서 적어도 5대 회계법인에서 총당부채 설정한 현재의 것들이 적정한 형태의 평가였는지에 대한 법원의 감정이 나올 때까지 아마 길어봐야 석 달 이내일 것임. 그것에 기초해서 그대로 판결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조치를 유예해 주셨으면 함.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진술하신 분들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먼저 말씀하셨던 진술인은 1대주주 측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말씀하신 진술인은 2대주주 측임.
- (위원) 지금 유상증자가 계획이 되어 있는지?
- (보고자) 지난번에 경영정상화 관련된 계획을 각각 1대주주, 2대주주가 다 제출을 했는데 그 관련된 구체성이 떨어져서 이번에 적기시정조치를 하게 된 것임.
- (보고자) 저희 입장에서는 외부감사인이 제출한 것에 의하면

자기자본이 부족하니까 경영권 분쟁과 무관하게 별도로 스케줄대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위원) 총당부채를 얼마로 쌓아야 될지는 추정문제라고 이해가 되는데, 이 총당부채를 ××억 원 쌓은 것에 대해서 회계감사인의 의견은 어떤 특별한 것이 있었는지?
- (보고자) 총 2건이었음. 하나는 소송 공동피고로 참여를 했고 그 건에 대해서는 소송 예정액의 ××%를 했음. 다른 하나는 보조참가였는데 그 건의 경우에는 ××%를 받았기 때문에 2개를 합해서 그런 것임. 그것은 전문가인 외부감사인 지정한 것에 대해서 유불리를 얘기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인 것임.
- (위원) 경영정상화 방안 검토 결과에 의해 판단한 것이므로 그 판단대로 하는 것이 좋겠음. 아까 2대주주가 말씀하신 것에 투자자보호 장치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만약 사실이라면 단순하게 경영관리도 중요하지만 투자자보호 장치에 대해서 허술하고 거의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한테 맡긴 것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의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듦.
- (보고자) 모니터링하고 확인해 보겠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69호 『은행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은행법 개정사항과 법제처 권고사항 등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70호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은행의 겸영업무 및 자회사 보유 가능 업무 등을 추가하는 내용

○ (위원) 중기부가 이런 요청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 (보고자) 중기부는 이전부터 신보에 예산을 지원해서 매출 채권보험 모집대행 업무를 시행하고 있었음. 중기부는 정책적 목적으로 동 상품을 활성화하고자 하지만 제한된 신보의 영업망으로는 활성화가 어려웠기 때문에 시중은행들에 모집대행을 의뢰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위원) 개정을 하게 되면 중기부가 의도한 대로 그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지?

○ (보고자) 은행들이 모집대행 업무를 할 경우 수수료가 지급될 예정으로 일부 은행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71호 『비씨카드(주) 및 (주)우리은행의 (주)케이뱅크은행에 대한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비씨카드(주)와 (주)우리은행의 (주)케이뱅크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를 승인하는 내용

- (위원) (주)케이티나 카카오 같은 IT업종을 인터넷뱅킹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비씨카드(주)가 IT업체냐고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동일그룹집단의 매출이 50% 이상 되면 그것을 본다고 하면 법령은 그대로 되는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이번에 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시다만 (주)케이티까지 같이 포함한 기준으로 보았음.

- (위원) (주)케이티 자체는 대주주 적격성이 안 되었지만 이것이 ICT업체로 인터넷뱅킹을 할 때는 전체로 봐서 했다는 취지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비씨카드(주) 자기자본비율이 34.84%인데 금융기관으로서는 굉장히 높아 보임. 최소비율 8%에 비교해 봐도 그

렇고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이 34.84%나 된다고 하는 것이 비씨카드(주)가 특별히 재무구조가 좋은 것인지 아니면 카드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것인지?

- (보고자) 비씨카드(주)의 경우에는 다른 카드사와 좀 차이점이 있음. 비씨카드(주)의 경우는 직접 신용카드를 발급하지는 않고 비씨카드(주) 회원사들에게 망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그래서 직접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카드사들은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신용판매에 대한 채권이 생김. 그런데 비씨카드(주)는 직접 회원에 대한 신용채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된 수입원이 가맹점수수료나 회원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비즈니스임. 그러다보니까 신용리스크가 있는 자산 비중이 적고 위험가중자산이 작아서 BIS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위원) 1안과 2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앞으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수시심사 또는 정기심사를 통해서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고, 의결권 제한 같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안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제기를 하고 싶지는 않음. 다만, 우여곡절 끝에 (주)케이티는 심사를 하지 않고 비씨카드(주)로 넘어갔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적격성이 안 되는 대주주가 의도적으로 제3의 계열사에게 전가하는 것이 생기면 그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관련된 법령을 정비하는 쪽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음.
- (보고자)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과정에서도 관련된 논의가 있었고, 금융위 법령해석심의회 심의과정에서도 그러한 의견이 제시된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 앞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검토해 보겠음. 다만,

은행의 경우 대주주에 대해 인가심사시 요건과 동일한 요건의 수시심사 제도가 있어 만약 심사대상을 현재보다 확대할 경우 기존에 진입한 주주들이 대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 경우 ICT기업의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인터넷특례법을 도입한 취지가 퇴색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행 제도를 우회하여 부적격자가 진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보겠음.

- (위원) 대주주로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암묵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구심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위원) 제도를 우회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함. 다만, 어제 빅테크(Big tech)·핀테크(Fintech) 관련하여 기존 금융회사와 간담회를 하면서 굳이 이렇게 IT기업들이 힘들게 다른 규제를 다 받아가면서 은행업 인가를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음. 일부 빅테크들의 경우 은행업 인가를 받지 않고도 은행업이나 대출중개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며 본인들 본래 사업에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 비즈니스모델 자체가 인기도 없고 그 취지도 퇴색해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됨. 이러한 점에 생각하면 우리가 앞으로 관련 제도 개선의 초점을 어디에 뒀야 할지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변화해 가는 미래의 트렌드에 초점을 뒀야 할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에 초점을 뒀야 할지 고민이 필요함.

○ (위원) 일부 빅테크는 규제를 받겠다고 하지만 이들이 생각하는 규제와 당국이 생각하는 규제는 다른 점이 있음. 예를 들어 빅테크는 별도 규제를 받지 않고 금융법령상 규제를 받는 파트너를 통해 대출 등 영업을 하겠다는 주장임. 그렇게 되면 금융법령상 규제를 받는 금융회사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 앞으로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함.

○ (위원) 그것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이 이슈가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이슈이고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제재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기존 은행권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나름대로 불만이 많이 있고 시장의 참가자들한테 어떤 기대를 돌려줄 것이냐 하는 것이니까 일단은 이것이 오용됐다는 개념, 그것은 우리가 불식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함.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72호 『비씨카드(주)의 (주)케이뱅크은행 주식취득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비씨카드(주)가 (주)케이뱅크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 34%를 취득하는 것을 금산법상 승인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73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신용정보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제도를 개선하고,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부가서비스 변경 고지방법 등 일부 제도를 합리화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74호 『(대구)해성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상호금융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등으로 (대구)해성신용협동조합 임원에 대한 '개선'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을 진술함

○ (진술인) 피징계인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나 고의·중과실 여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금융기관으로서는 대출 당시 한 사람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명확하게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지 않게 업무를 취급할 수 있음. 그러나 여러 사람이 서로 다른 시기에 분산하여 대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동일인의 계산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판정하기 쉽지 않음. 그래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여신업무방법서 제4조제2항에 보면 동일인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음. 동일 세대인이

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동업자 및 그 해당 법인 직원,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 채무자가 임원인 경우 해당 법인이라고 해서 동일인 간주 규정을 두고 있음. 또 같은 조 제1항에서는 동일인으로 간주되는 자 등의 명의로 그 대출이 분산되어 실행되었다고 하더라도 명의차주 별로 각자의 사용목적에 의하여 각자 사용되어지는 경우에는 동일인 대출로 보지 아니한다고 대출업무처리 규정을 두고 있음. (대구)해성신용협동조합에서 문제가 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상자는 8명인데 그 8명의 대출은 대출 당시에 이 동일인 간주 규정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었음. 다만, ○○○의 대출에는 남편 ○○○, 자녀 ○○○, ○○○ 경우에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어서 동일인 간주 규정에 해당되었음. 그러나 그들의 대출 당시에 명의 차주 별로 각자의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각자 사용되어지는 경우로 판단되어 아마 대출이 실행되었던 것 같음. 따라서 (대구)해성신용협동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 대상자들도 그들 사이의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서 사후적으로 동일인 대출로 판정된 부분이 많음. 그래서 그 대출 당시의 위법이나 부당행위의 정도 그리고 고의·중과실의 여부에 있어서는 충분히 참작할 여지가 있음. 그리고 사후수습의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로 지적 받은 이후에 (대구)해성신용협동조합은 지속적으로 상환처리를 해서 현재는 지적대상자들 대출이 거의 해소되고 있음. 또 대상자들에 대한 대출이 미회수되거나 부실채권된 것은 없음. 동일인 대출한도로 인하여 (대구)해성신용협동조합에 실제 손실이 난 것도 없음. 동일인 대출 중에 ○○○ 대출이 있는데 이 ○○○의 대출이 현재 12억 원 가까이 대출

이 남아 있었는데 오늘 8억 원이 상환되어서 많은 부분이 해소되었음. ○○○ 대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남아 있는 대출금이 2억 9,000만 원이고, ○○○의 경우에는 현재 1,100만 원 밖에 남아 있지 않고, ○○○ 대출은 금일 상환하고 나면 4억 원 정도 남는 상태임. 이와 같이 (대구)해성 신용협동조합 동일인 대출이 이루어진 경위를 보면 위법행위의 정도가 경미하고 고의나 중과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경미한 과실로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또 동일인 대출 한도 초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대출해소 노력을 했고 (대구)해성신용협동조합의 성장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면서 지역사회에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음. 특히, 세 번째 임기여서 마지막 임기인데 이제 임기가 5개월이 채 남지 않았음. 그래서 그동안의 공로를 감안하시어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주시기 바람.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대리인께서 조치자가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인데 '개선(改選)'되면 즉시 효과가 발효되는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금융위 조치통보가 되면 그 순간 직무가 정지되어 빠른 시일 내에 총회를 개최해서 다른 이사장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음.
- (위원) 임기가 5개월 남았으니까 5개월만 봐 달라는 그런 취지인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동일인 대출이 일어난 것이 공통된 시점에 일어난 것인지?
- (보고자) 한꺼번에 나간 것은 아니고 약간의 시차를 두고 있으며, 영업하는 과정에서 대출 취급 당시에 최소한 동일인 대출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음. 동일인 대출한도 위반으로 적발할 때 대출금의 사용용도라든지 차주의 상환 능력 등 실제 차주 여부를 파악하는데 이런 것을 소홀히 한 채 대출을 했음. 그래서 동일인 대출한도 위반으로 조치를 했고 그 대출 당시에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정황을 볼 수 있어서 이 건을 제재하는 것임.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75호 『○○○의 대백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가 대백저축은행 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지분율 30%를 초과하는 대주주가 되는 것을 승인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76호 『(주)○○○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등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 주식 매출과 관련하여 ○○○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77호 『리더스금융판매(주) 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보험영업검사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리더스금융판매(주) 보험대리점이 허위·가공 보험계약 모집금지 등 다수의 보험업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영업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을 진술함

○ (진술인)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모두가 이번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 다만, 당사에 예정되어 있는 과태료 22억 6,000만 원과 영업정지 60일은 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므로 감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당사 전체 8,600명의 보험설계자 중 위반자는 2%미만인 149명임. 그런데 98%가 넘는 선의의

보험설계사가 피해를 입게 됨. 부당모집행위를 주도한 소수의 임직원들은 분사로 인해서 제재를 회피하였음. 결국 7,000여명의 선량한 보험설계사가 제재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임. 보험영업은 대면영업이라는 보험업종의 특성상 코로나19사태가 겹쳐 많은 보험설계사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음. 따라서 기관제재를 하면서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관련법규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감경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당사는 이사회를 통해 그동안 부족했던 제반규정을 정비하고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개선요구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해 나가고 있음. 실제로 금융당국이 요구한 개선사항에 대하여 상당 부분을 개선하고 있음. 금융감독원이 조직관리 등 개선요구사항 15개 항목 중 12개 항목을 이사회를 통해 의결하고 시행하고 있는 중임. 당사도 보험대리점 업계가 바뀌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함. 그러나 원안대로 제재가 확정될 경우 회사는 한계상황에 처함. 회사가 감당할 수 없는 제재보다는 감당할 수준의 제재를 통해 회사가 추진하는 자정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그 결실이 보험대리점 업계에 순기능으로 작동되어 업계의 모범적인 선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함. 그러기 위해 회사는 내부통제 강화 등 경영개선에 더욱 노력하겠음.

- (진술인) 회사의 자본금은 10억 원인데 이번에 과태료 부과한 금액은 22억 6,000만 원임. 또 영업정지 기간이 60일이면 실제로 보험영업 하는 설계사분들이 급여를 받는 것은 3개월 (90일) 후가 됨. 이런 점을 감안해 주셔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분사했다고 하고 경영권 분쟁 말씀하셨는데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람.
- (보고자) 경영권 분쟁은 얼마전에 분사한 전 대표 ●●●에 대한 내용이고, ●●● 대표에 대해서 보험료 대납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는 등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음
- (위원) 그러면 진술인은 뒤에 오신 분인지?
- (보고자) 그러함. ●●● 퇴사 후 몇 달 간 ▲▲이라는 분이 대표를 맡고 있다가 불과 한 두 달쯤 전인 최근에 ♠♠♠씨로 대표가 바뀌었음.
- (위원) 진술인 주장은 일은 앞에서 저질렀고 그 사람들 다 분사해서 다른 데서 영업하고 있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을 처벌하니까 억울하다는 취지인지?
- (보고자) 그런 취지임. 그런데 대표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대리점에는 총 16개의 사업부가 있음. 16개 사업부 전체에 148명이라는 사람이 불법행위를 자행했던 것임. 주도했던 前대표이사가 일부 조직을 데리고 분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꼭 그 사람만 위법행위를 한 것은 아님.
- (위원) 8,600명이면 굉장히 큰 GA인 것 같은데 지금 영업정지 내린 것이 사실 전체에 대한 업무정지가 아닌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그러면 자기들 영업에서 중단되어 지장을 받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 (보고자) 생·손보가 딱 절반 정도 됨.
- (위원) 그런데 신계약모집업무이니까 생보 중에서도 얼마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 (보고자) 세부적인 자료는 더 봐야 되겠지만 생손보가 기본적으로 절반씩이고, 기존에 이미 체결했던 계약에서 나오는 유지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 그래서 실제 영향은 새로 신계약하지 않는 그 부분만 영향을 받게 됨.
- (보고자) 참고로 지난 해 이 대리점의 모집수수료 규모를 살펴보면 생보가 한 ◇◇억 원 정도 되고 손보가 한 ◎◎억 원 정도 되고 있음. 과거에 30일 영업정지를 받은 대형대리점에서 샘플 분석을 해 보니까 수수료가 일부 감소하거나 변동이 없었고 오히려 증가한 경우도 있었음.
- (위원) 영업정지를 한 30일 정도 받았는데도 그러한지?
- (보고자) 30일은 사실상 시장에서 영업정지를 받지 않는 것과 다름 없을 만큼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위원) 30일은 거의 효과가 없었고, 60일 사례도 있는지?

- (보고자) 60일은 영향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진술인들이 말씀하시는 생계 위협의 수준까지는 생각되지 않음
- (위원) 설계사들이 자기 조직에서 로열티를 받고 있는건지?
- (보고자) 대부분 과태료가 부과 되면 각 사업부별로 배분을 시키고, 그 사업부에서 설계사마다 배분을 시켜서 감당하고 있는 구조임.
- (위원) 과태료 부과에 따라 설계사가 부담을 받는 건 아닌지?
- (보고자) 다만, 통상 조직이 크면 클수록 수수료율이 높아지므로, 그간 고율의 수수료 수당을 받아온 것임. 그만큼 이득을 향유했기 때문에 위법행위에 대한 불이익도 감수해야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됨
- (보고자) 설계사분들은 진짜 힘들게 되면 다른 대리점이나 다른 조직으로 옮겨가기도 할 수 있으며, 이 업무를 그냥 그만 두는 경우는 흔치 않음.
- (위원) 자본금이 10억 원이라서 과태료 부과에 대해 선처를 해달라고 하는데 사업부 별로 분배를 해서 건어서 내려고 할 텐데 그렇지 않고 몇 개의 사업부별로 분사를 하고, 기존에 있는 리더스금융판매(주)는 파산을 하고 분사를 시켜서 우회를 하면 제재효력이 없지 않은지?

- (보고자) 그러한 문제가 있음. 분사 등을 통해 제재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라고 보고 있음. 그래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 중에 있음.
- (위원) 자본금 10억 원에 과태료 20억 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과태료 납부하고 나면 영업을 못하게 되는 것 아닌지?
- (보고자) 1년 동안 수수료 수입만 하더라도 거의 ◆◆억 원이 넘음.
- (보고자) 재무제표에 안 나타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별도로 비상금이라고 해서 예상하지 못한 손실에 대비하는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많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78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8월27일 시행 예정인 ‘온라인 투자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시행령 제정령안 내용

- (위원) 요즘 P2P대출 연체율이 계속 높아진다는 보도도 나오고 사모펀드 관련해서 P2P쪽에서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

이 계속 나올 수 있어서 적절하게 이용자보호를 위해서 시행령 만드는 것은 좋다고 생각함. 그런데 지금 P2P금융을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은지? 이번에 최소 자본금 규모가 연계대출 규모에 연계되어 있는데 최소 5억 원임. 그러면 지금은 5억 원 미만의 자본금을 가진 업체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 (보고자) 현재 5억 원 미만의 자본금을 갖춘 업체들의 경우 거의 대부분 등록을 하지 못하고 걸러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위원) 그런 업체들은 영업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도권 밖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남는 것인지?
- (보고자) P2P업으로 정식 등록하지 못하게 된다면 대부업으로의 전환이나 폐업을 유도하고자 함.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79호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감독제도팀장이 내용을 설명함

※ 금융그룹의 건전한 경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

- (위원) 이 건은 「금융그룹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으로 되어

있던 것을 국제규범에 맞추어서 법제화 해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을 정하는 건으로 국제규범에도 맞고 금융그룹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상당히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함. 다만, 금융 안정이나 실물경제 안정에도 많은 업무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령이나 하위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금융위, 금감원이 금융그룹감독에 관한 과정에서 연계 되는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함.

- (보고자)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위원) 이것이 감독적인 목적의 필요성은 있는데 감독을 받는 곳은 “왜 또 이것을 하느냐? 업권으로 이미 생명보험 다 감독받는데 왜 또 하느냐?”고 하는 분들이 있고, 반대편은 “그런 것을 무슨 감독이라고 했느냐? 더 세계 해야 된다.”고 양쪽이 극단적으로 나뉘는 사이에서 중간에 있는 부분이 있고, 필요성이 적다고 할 때 지주회사는 지주회사법으로 잡았는데 예컨대 산업은행은 지주회사법은 아닌데 업권은 2개 있으니까 산업은행을 여기 넣는 것이 맞느냐고 할 때 산업은행이 엄격히 따지면 금융지주 비슷한데 산업자본 비슷한 것도 아닌 것 같으나 실제로 감독이 되니까 그런 것 같고, 나머지 고민은 네이버가 만약에 여러 개 할 때 네이버 자산이 5조 원이 넘는데 그러면 네이버도 여기에 넣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막 시작하는데 거기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감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의견도 잘 수용해서 시장성이 수용성도 되고 실질적인 효과도 되는 그런 제도를 만드

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서 하위 법령 제정시 의견을 잘 듣도록 하겠음.

- (위원) 위험집중과 위험전이를 2개의 다른 쪽지로 제시를 하셨는데 그 얘기는 각각에 대한 것을 최소한으로 계측하시겠다는 뜻인지?
- (보고자)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모범규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약간의 보완을 위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사항이기 때문에 하위규정에 아마 규정될 것 같고, 금감원이나 여러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음.
- (위원) 금융산업이나 여타 산업도 중복규제나 과잉규제를 해서 과도하게 경영을 억제하는 사례는 당연히 없어야 된다고 생각함. 그런데 과거에 계열 금융사가 부실화되면서 그룹 전체가 부실화된 사례가 있었고, 그것이 우리경제에 지대한 부정적 영향을 주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국제규범도 그렇고 어느 정도 규제의 건전성 감독은 필요한 것 같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46호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정안』을 재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의사운영정보팀장이 내용을 설명함

※ 단순반복적인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금융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검사·제재 절차를 보다 신속히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80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인신용정보 관리업자(MyData) 허가·신고 등의 세부절차 등을 규율하고, 법률 개정에 따라 신설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81호 『(주)우리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일반은행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주)우리은행이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3) 보고안건 심의

- 보고안건 제23호 『나이스평가정보 등 7개사의 신용정보업 허가 간주 특례 신고 수리 통보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 정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신용정보업 허가단위가 개편됨에 따라, 기존 신용정보업자에 대해 개편된 신용정보업 허가단위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 위하여 동 법 부칙에 따라 특례 신고를 수리하는 내용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보고안건 제24호 『금융투자업 인가 등의 심사 진행상황 중간 보고』, 제25호 『외국환포지션 한도 위반에 대한 제재현황 보고』, 제26호 『'19년말 기준 (주)한국씨티은행 등 4개 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정기 적격성 심사결과 보고』를 상정하여 서면보고함

- 각각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접수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0년도 금융위원회 제14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7시 30분 폐회)